“누구나 당일대출 가능”… 불법사금융 급증 ‘주의’

지난해 피해신고 전년비 12% 증가
고금리·수수료 요구 등 사례 다양
금융당국, 서민대출상품 이용 당부
“대응요령 숙지…의심대출 피해야”

고물가·경기침체 장기화로 생활비 부담에 시달리는 서민들이 급전이나 긴급생활자금을 찾는 일이 늘어나면서 불법사금융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만연한 불법대출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지역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1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상담 건수는 6만3187건으로 전년(6만3283건)과 유사했으나 단순 상담을 제외한 ‘피해(우려) 신고’는 1만5397건으로 전년(1만3751건) 대비 12%(1646건) 증가했다. 특히 불법채권추심, 불법사금융업 등을 포함한 불법대부 관련 신고는 1만4786건으로 전년 대비 1902건 증가했고 유사수신 신고 건수는 611건으로 256건 줄었다.

불법사금융은 정부나 금융당국에 등록되지 않은 불법 업체 또는 개인이 고금리 대출, 불법 채권 추심, 대출 사기 따위를 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주로 경기민감도가 높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이뤄지며, 구체적으로 ‘법정최고이자율(연 20%)을 초과해 이자를 수취하는 행위’, ‘등록하지 않은 대부(중개)업자가 대부 관련 광고를 하는 행위’, ‘폭행, 협박 등을 수반한 불법 채권추심 행위’, ‘대출과 무관한 개인정보 등을 요구하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한다.

신용등급이나 소득서류 등을 위·변조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불가능한 대출을 받게 해주는 불법 금융 사기 ‘작업대출’도 빈번하게 일어난다. 신용불량자나 무소득자 등 대출을 필요로 하는 이들의 간절함을 이용하며 대가로 중개수수료(수수료, 사례금, 착수금 등)를 요구하거나 대출금을 훔쳐 달아나는 수법이다. 작업대출에 연루됐다면 사기 피해자라고 하더라도 처벌을 피하기는 어렵다. 대출 과정에서는 △공문서·사문서 위·변조 △사기·사기방조 △본인 명의의 통장, 카드 등을 타인에게 양도·대여(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다양한 불법 행위가 동반되며, 이는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불법사금융은 주로 금융기관 대출이 어렵고 급전이 필요한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불법 운영되며 피해자들은 단순한 금전적 손실뿐 아니라 불법 채권추심, 개인정보 유출 및 범죄 악용 등으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불법사금융의 유형, 수법, 대응 방안 등을 사전에 숙지해 의도치 않은 피해를 최소화하고 검증되지 않은 대출 제안은 단호히 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

먼저 긴급자금이 필요한 경우 서민금융1332의 서민대출안내 코너 또는 서민금융진흥원(1397, 1644-1110)을 통해 본인의 소득 및 신용수준 등에 맞는 대출상품을 알아보거나, 각 은행 및 서민금융회사 등에 유선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해 대출상품을 상담받는 것이 좋다. 서민금융진흥원은 불법사금융에 노출되기 쉬운 취약계층의 소액 생계자금을 위한 ‘불법사금융예방대출(소액생계비대출)’, 대부업 등 고금리 이용이 불가피한 저신용자를 위한 ‘햇살론15’, 햇살론15마저 이용이 어려운 최저신용자를 위한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등을 운영하고 있다.

대부업체를 이용하더라도 대출업체가 등록대부업체인지 여부를 확인(금융감독원(1332) 및 지자체 대부업담당자에 문의)해야 한다. 등록업체의 경우 이자율 위반 대부계약을 체결할 확률이 낮은 편이기 때문이다. 문자메시지, 일수전단지, 명함 등을 통한 대출광고는 불법사금융 업체이므로 이용을 피해야 한다.

만약 법정 최고 이자율 위반으로 경찰에 신고하거나 채무변제를 완료했음에도 사채업자가 고금리 이자의 변제를 요구해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을 낼 경우, 증거부족으로 이자율 위반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대부계약 시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한 계약서를 받아 보관하고 변제사실을 증명하는 영수증이나 계좌이체 내역을 보관해야 한다.

불법채권추심으로 피해를 당했거나 채권추심행위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문의가 필요할 경우에는 금융감독원(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과 상담하고 각 지자체 소관부서 또는 지역 경찰서(지능범죄수사팀)에 신고하면 된다. 불법채권추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휴대폰 등을 이용해 통화내용 녹취, 사진, 동영상 촬영을 통한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채권추심자가 소속을 밝히지 않는 경우’, ‘채무자 또는 채무자의 가족에게 대위변제를 요구하는 경우’, ‘채권추심자가 압류, 자택실사, 경매 등을 한다고 협박하는 경우’도 불법채권추심에 해당한다.

대출을 대가로 ‘금융컨설팅 수수료, 보증보험료, 저금리 대출 전환’ 등 각종 명목으로 수수료 등을 요구할 경우 거래에 응하지 않아야 하며, 대출중개수수료 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의 ‘불법대출 중개 수수료 피해 신고코너’나 각 금융협회로 신고하면 된다.

불법사금융 피해를 입었을 경우 △피해신고 ‘경찰청(112)’ △피해 상담 및 채무자대리인 신청 접수 ‘금융감독원(1332)’ △법률상담, 채무자 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선임 지원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등으로 연락하면 된다. 불법사채 해결 명목으로 수수료 또는 후원금 등을 요구하는 사설업체(불법사금융피해구제센터, 금융범죄예방센터, 한국금융범죄예방연구센터 등)는 정부기관과 관련이 없다.

나다운 기자 dawoon.na@jnilbo.com

광주은행,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재기부

광주은행은 지난 10일 고병일 은행장을 비롯한 임직원이 고향사랑기부제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이를 통해 받은 답례품을 다시 지역사회에 기부하는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재기부’ 행사를 진행했다. 광주은행 제공

광주은행은 지난 10일 고병일 광주은행장을 비롯한 임직원이 고향사랑기부제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이를 통해 받은 답례품을 다시 지역사회에 기부하는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재기부’ 행사를 진행했다고 13일 밝혔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고향(주소지 외의 지자체)에 기부하면, 해당 지자체는 이를 주민 복리 증진에 활용하고, 기부자는 연간 2000만원 한도 내에서 기부하면 10만원까지는 전액,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공제 혜택과 더불어 기부 금액의 30% 한도 내의 답례품 혜택이 제공된다.

지역을 대표하는 광주은행은 지난 2023년부터 ‘고향사랑기부제’에 적극 참여해오고 있으며, 올 3월 한 달간 임직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결과, 약 1억3000만원을 광주·전남 지자체에 기부하며 지역 사랑을 실천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기부 참여를 통해 받은 2200만원 상당의 답례품을 다시 지역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함으로써 지역 내 취약계층에게 따뜻한 온정의 손길을 더했다.

최권범 기자

광주디자인진흥원, ‘ESG 혁신리더’ 출범

광주디자인진흥원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혁신을 선도하기 위해 ‘ESG 혁신 리더(주니어보드)’를 출범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출범식은 ESG 경영의 실천을 강화, 조직 내외부의 변화를 이끌어낼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실행력을 갖춘 인재들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중요한 첫걸음이 될 예정이다.

ESG 혁신 리더는 다양한 부서의 젊은 세대가 함께 참여하는 주니어보드 형태로 구성돼 있으며, 청년 인재들의 ESG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실행력으로 지속 가능한 디자인과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ESG 경영의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용모 광주디자인진흥원 원장은 “이번 ESG 혁신 리더의 활동을 통해 지속 가능한 디자인 혁신을 주도하고, 청년들이 ESG 분야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나다운 기자

제 1167회 로또

당첨번호	2등 보너스 번호
8 23 31 35 39 40	24

등위	당첨방법	당 첨 금
1등	6개 숫자 일치	28억8408만원
2등	5개 숫자+ 보너스 숫자 일치	6966만원
3등	5개 숫자 일치	163만원
4등	4개 숫자 일치	5만원
5등	3개 숫자 일치	5000원

법원 경매부동산의 매각 공고

1. 매각물건의 표시 및 매각조건

<경매 2계>

※QR코드 : 법원경매정보 웹으로 접속됩니다.

사건번호	매각물건 물건번호	소재지 및 면적[㎡]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단위 : 원]	비고
[기타]					
2023타경 6684 2024타경 6490 [중복]	1	강진군 마량면 마량리 1002-1 4234㎡	공장용지	1,568,445,550 1,568,445,550	일괄매각.공장저당법제6조기계기구[툿라인등소재불명,감정평가서참조]포함.목록5단층어업용창고107.28㎡현황멸실.목록6공부상스레트지붕이나,현일부판넬지붕.목록7단층사무실면적250㎡현황면적124.8㎡
		동소 1002-26 1734㎡	공장용지		
		동소 1002-29 1608㎡	공장용지		
		강진군 마량면 마량공단길 32 단층 1,050㎡ 부속건물 단층 창고164.65㎡ 164.65㎡ 제품보관창고278.2㎡ [변경전]단층 1,050㎡ 사무실250㎡ 창고1048.7㎡ 부속건물 단층 창고164.65㎡ 164.65㎡ 제시외 창고등502.7㎡ 기계기구툿라인1식[지상위제시외건물매각포함.단층창고면적164.65㎡,현황상면적28㎡]	공장		
		동소 32 단층 어업용창고107.28㎡	기타		
		동소 32 [제3호] 단층 1048.7㎡	공장		
		동소 32 단층 250㎡	사무실		
2024타경 5343	1	장흥군 안양면 기산리 242-11 3315㎡	창고용지	3,656,752,700 3,656,752,700	일괄매각.기계기구포함.제시외기계기구[저장창고HEPA Filter설비]포함.목록5지상분묘2기소재
		동소 242-10 241㎡	창고용지		
		동소 242-12 396㎡	창고용지		
		동소 242-13 9283㎡	창고용지		
		동소 산82-7 923㎡	임야		
		장흥군 안양면 우드랜드길 314-2 [농산물유통센타가동] [현황:저온창고] 단층 463.4㎡ 제시외 냉동설비등6식	창고시설		
		동소 314-2 [농산물유통센타나동] [현황:저온창고] 단층 463.4㎡	창고시설		
		동소 314-2 [농산물유통센타다동] [현황:저온창고] 단층 463.4㎡	창고시설		
2024타경 5343	1	장흥군 관산읍 죽청리 48-5 13㎡	대	23,503,400 23,503,400	일괄매각.지상위제시외건물[창고등,차양]매각제외.일반건축물대장상목록3,5및인접필지상소재등재건물2동[주택36㎡],[부속19.9㎡]소재불명
		동소 49 215㎡	대		
		동소 49-1 50㎡	대		
		동소 52 298㎡	묘지		
		동소 54-1 205㎡	대		
		동소 458-1 303㎡[물건번호1:목록2,5인접지상소재건물일부경계불명해정확한경계측량요.지상식재감나무등수목매각포함]	대		
2024타경 6094	1	장흥군 대덕읍 옹암리 330 383㎡[농지취득자격증명요[사실조회회신서참조].맹지]	전	3,523,600 3,523,600	
[아파트]					
2024타경 5961	1	강진군 강진읍 삼일로36, 102동 4층 401호 [천년예가] 63.28㎡	아파트	130,000,000 130,000,000	

● 공고된 부동산의 면적 표시는 실제와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특별매각조건

①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해야 하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지 아니함으로써 매각이 불허가 될 때에는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이를 배당시 매각대금에 산입한다. 불법형질 변경으로 인한 원상복구가 필요한 경우 매수인이 이를 부담할 수 있음.

② 공유자가 민사집행법 제140조에 의한 우선매수신고를 한 경우 그 매수신고 후 최초로 진행되는 매각기일에 매수보증금의 미납으로 실효되는 경우 그 공유자는 그 이후 해당 부동산의 매각기일에서는 우선 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당해 기일에 다른 매수신고인이 없는 경우 최저매각가액을 공유자우선 매수신고액으로 본다.

2. 매각기일 : 2025. 4. 28.[월] 10:00

3. 매각결정기일 : 2025. 5. 7.[수] 11:00

4. 매각장소 : 장흥지원 경매법정

5. 매각방법

① 입찰법정에 비치된 기일입찰표에 사건번호, 입찰자의 성명, 주소, 입찰가격, 보증금액 등을 기재하고 날인하여 보증금을 함께 입찰봉투에 넣어 입찰함에 투입하면 됩니다. 매수신청의 방법으로는 최저매각가격의 1할[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발행의 자기앞수표 또는 현금을 준비하거나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일명 보증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입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입찰자목록에 각자의 지분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합니다.

③ 입찰봉투의 투입이 완료되면 곧바로 개찰을 실시하여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을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정하고,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입찰자들만을 상대로 추가입찰을 실시합니다.

④ 최고가매수신고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을 제외한 다른 매수신청인들의 매수신청보증금은 입찰절차가 종결되는 즉시 반환합니다.

6. 매각허가 및 대금납부

①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에 대하여 매각결정기일에 매각허가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대금지급기한은 통상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로 지정됩니다.

② 지정된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재매각을 실시합니다. 다만, 재매각기일로 지정된 날의 3일전까지 종전 매수인이 매각대금 및 지연이자, 비용을 납부하면 대금납부로서 유효하며, 따라서 재매각은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7. 소유권이전 및 인도

① 매각대금을 납부함으로써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며, 각종 저당권, 가압류등은 순위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소멸됩니다. 소유권이전등기 및 저당권이나 가압류의 말소등기를 위해서는 등록세와 지방교육세를 납부한 후 등록세영수필확인서 및 등록세영수필통지서를 첨부하고, 국민주택채권발행번호를 기재한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이 위 등기를 촉탁하여 줍니다.

② 매각대금을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 소유자 또는 대항력있는 부동산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부동산을 인도하여 주지 아니하면 법원에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8. 주의사항

① 매각된 주택 또는 상가건물에 최선순위의 저당권 등이 설정된 날짜보다 먼저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이나, 사업자등록신청을 마친 임차인이 있을 때에는 그 임차보증금을 매수인이 인수하여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② 일반인들의 열람에 제공하기 위하여 매각기일 1주일 전부터 매각물건 명세서, 현황조사보고서 및 감정평가서의 사본 등을 우리법원 민사집행[신청]과에 비치하거나 법원경매정보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고 있으므로 미리 필요한 정보를 얻으신 후 입찰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③ 특별매각조건의 내용은 매각물건명세서의 열람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④ 입찰법정에 나오실 때에는 입찰표의 기재 및 입찰보증금의 반환에 필요하오니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오시기 바라며, 타인의 대리인으로 입찰하려고 하는 사람은 인감증명을 첨부한 위임장을 반드시 입찰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⑤ 소유권이전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요구되는 농지의 경우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결정된 후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여야 매각이 허가됩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에 의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지 않음이 소명된 경우에는 매각이 허가될 수 있습니다.

⑥ 공고된 물건중에 매각기일 전에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집행이 취소·정지된 경우, 또는 매각기일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도의 공고 없이 입찰에서 제외됩니다.

⑦ 신문에 공고되는 물건은 최초의 매각기일에 해당되는 물건이며, 속행사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신문공고를 하지 않으므로 법원에 비치되거나 법원경매정보 홈페이지에 게시된 매각물건명세서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⑧ 매각대금을 납부하기 전까지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면 매각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에는 매수신청인이 제출한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합니다.

매각기일 공고의 요지는 대한민국 법원 법원경매정보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주소 : http://www.courtauction.go.kr [경매공고 → 매각공고 선택]

※ 대한민국 법원 법원경매정보 홈페이지에서 공고내용외의 열람 가능한 정보는 법률상 제공하도록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것을 국민편의를 위하여 따로 제공한 것으로서, 혹시 그 중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더라도 이를 이유로 매각불허가 신청이나 항고, 대금감액신청이나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관심있는 물건에 관하여는 반드시 법원에 나오셔서 게시된 매각기일의 공고나 비치된 매각물건명세서 등을 직접 확인하신 후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2025. 4. 14.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사법보좌관 조길호